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 
일부개정법률안  
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776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6.

발 의 자 : 서왕진·황운하·박은정  
박지혜·정춘생·이해민  
강경숙·신장식·차규근  
김준형·한창민·용혜인  
김정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, 풍력, 수력, 해양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해수열, 하천열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한 에너지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,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·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).



##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햇빛·물·지열(地熱)”을 “햇빛·물·공기·지열(地熱)”로 하고,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수열·해수열·하천열·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나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 정 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“재생에너지”란 <u>햇빛 · 물 · 지열(地熱) · 강수(降水) · 생물 유기체</u>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| 2. ----- <u>햇빛 · 물 · 공기 · 지열(地熱)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~ 사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 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. <u>수열 · 해수열 · 하천열 · 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</u><br><u>나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</u><br><u>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</u><br><u>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</u><br><u>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</u><br><u>당하는 에너지</u> |
| 아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자.</u> (현행 아목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~ 5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